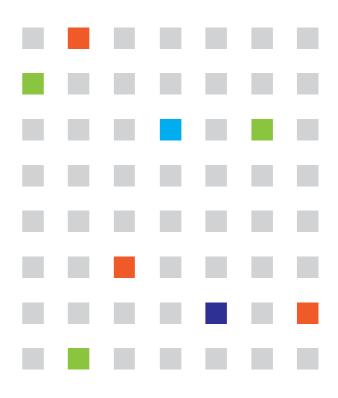


2022년 12월 AML REPORT

- 1. 자금세탁방지(AML) 동향
- 2.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법 및 유형



본 자료는 당행 자금세탁방지부에서 임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AML 관리 체계 개선 요구 (1)

- □ 금융감독원은 '외환 이상송금' 사태 발생 직후 실시한 신한은행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가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 금감원에 다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고객확인, 위험평가를 위한 별도 조직과 전담인력, 전산 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mark>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배치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mark>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 □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 하고 있으나. 고객 예치금 잔액 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받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회계법인 실사자료 징구를 정례화하는 등 예치금 잔액 대사업무 신뢰성을 높이라 고 했다.
- □ 또한,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점검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개선사안으로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내부 규정으로 국외점포 임점 (직접) 점검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부규정을 개정해 AML개선이 미진한 국외점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점점검으로 실시하 라고 했다.
- □ 외환거래 시 수취인이 금융제재(Sanctions)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제재 검색 정보 확대 점검 인력 보강도 요구했다.
- □ 금감원은 고객확인 재이행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해 이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또 **외국인 고객확인 시 여권 외 증빙서류에** 대해선 전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증빙서류의 전산 <mark>등록을 필수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mark>하라고 했다.
 - ➡ 시사Point :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담 인력 규모 및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아주 엄격한 잣대로 검사하는 추세!

(2) 관세청, 가상자산 집중 단속 중

- □ 관세청이 가상자산 급등과 관련해 2021년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 □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ark>관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mark> 불법외환거래 단속으로 1603건에 12조5664억원을 적발했으며, 적발 유형이 가장 많은 경우는 외환 사범*이다.
 - * 외환사범 : 무등록 외국환 업무(일명 환치기)(제8조)와 지급 수령 방법의 신고(제16조) 위반 등
- □ 특히, 2020년 이후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적발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mark>가상</mark> 자산 급등에 따른 불법 시세차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 시사Point : 불법 해외송금 관련 감독기관의 단속이 집중되므로, 외환송금 업무 시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 이행 필요!!

(3) 기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자금세탁 혐의로 美검찰 기소되나

- □ <mark>미국 검찰이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경영진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mark>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FTX 파산사태보다 더 큰 후폭풍이 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2018년부터 자금세탁 및 불법 송금 혐의로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 ⇒ 시사Point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

(1) 대체송금시스템(Alternative Remittance system)

- ◎ 은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고객을 대신하여 국가간에자금이나 다른 형태의 가치재를 이전하는 것으로 소위 '환치기'
- ◎ 주로밀수, 재산도피, 도박, 횡령자금의 은닉 등에 많이 이용되며,환치기 업자는 외환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 송금회사 연계

(2) <mark>차명계좌</mark>

- ◎ 자금세탁 범죄 관련계좌의 예금주나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의 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등록하여 실소유자의 소유관계를 은닉하기 위함
- ◎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등의 명의를 이용하며, 제3자 스스로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3) <mark>도박거래</mark>

- ◎ 명백한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가 없어도 최근에 얻은 재산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음
 - ※ 도박장에서 본인들이 획득한 것으로 위장
- ◎ 범죄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실제 도박을 하여 일반적 승률정도의 금액을 획득하여 도박을 통한 수익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음

(4) <mark>현금거래</mark>

- 거액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수개의 금융기관 또는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이면서 지금도 가장 성행하는 방식
 ※ 출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움
- ◎ 최근 5만원권 등 고액권이 유통되면서 과거에 비해 현금이 이송이 용이하여 다시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

(5) 위장기업 혹은 유령사업체

- 자금세탁 행위자가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그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처럼 가장하는 방법
- ◎ 범죄수익을 사업체의 수입으로 가장시켜 은행에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상 자산관계를 은폐할 수 있음(카지노)
- ◎ 자금의 실 소유주가 1인 주주 혹은 지배 주주로서 전위 사업체를 통한 자금을 직접 통제할 수 있음

(6) <mark>무역거래</mark>

-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결제가격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탈세, 재산해외도피 또는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자주 이용함
- ◎ 실제 수입가보다 고가로 거래가격을 조작하거나 심지어 문서상으로만 수입을 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